

##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

이금룡\*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 Samples (PUMS) 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 이단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 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크 파악을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조적 보장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 세 배 이상 단독주거를 하고 있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관에서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문제 제기

1965년 이민국가에게 이민자수를 할당하던 이전의 이민정책을 가족의 재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꾼 후, 미국내 소수민족 노인들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노인학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Gelfand & Kutzik, 1976). 소수민족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소수민족 노인들은 미국의 백인노인들에 비해 확대가족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현상을 주로 문화적 관점(전통적인 가족주의)과 경제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Angel & Tienda, 1982; Beland, 1984; Bishop, 1986; Wolf & Solo, 1988; Burr & Mutchler, 1993; Kamo & Zhou, 1994).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시아 노인들이 제외된 채로 주로 흑인과 남미 노인들에게 국한되어 왔었다(Hooyman & Kiyak, 1993). 게다가 센서스를 이용한 연구들은 센서스에 나타난 아시아 노인인구가 전체 미국 노인인구에 비해 극히 소수라는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아시아 노인들을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간주해 왔다(Burr, 1990; Chi & Kim, 1995; Hime, Hogan & Eggebeen, 1996). 또한 개별적 사례연구들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하나의 소수민족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혹은 두 소수민족 노인들간의 주거형태 비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는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Kiefer

et al., 1985; Koh & Bell, 1987; Mutchler, 1990). 이러한 상황에서 재미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나마 개별 사례연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미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소수민족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대한 연구들은 또한 아시아 노인들을 민족 혹은 국가별로 단순히 분류하거나, 소수민족 노인집단을 이민자 노인과 미국태생의 노인으로 분류하는 데 그치고 있다(Alston & Benigno, 1988; Angel & Angel, 1992; Boyd, 1990; Hime, Hogan, & Eggebeen, 1996; Kamo & Zhou, 1994). 사실 이민자 노인들은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만약 영주권자 노인들과 귀화 시민권자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서로 다르고, 이 두 집단의 주거형태를 설명하는 요인들이 그 특성상 차이에 의한다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를 하나의 이민자집단으로 묶어서 주거형태를 분석한 종래의 연구결과들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 는 동화(acculturation) 정도,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그리고 미국내의 한국 지역공동체(Korean community)를 비롯하여 나이, 성별, 교육정도, 결혼상태, 그리고 자녀수 등도 함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높이기 위해서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한국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폭 넓게 이해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미 한국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거형태를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으로 분류하여 비교 고찰한 후, 이들 세 집단의 차이점을 밝히고, 특히 주거형태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단순히 동화의 차이로만 설명해 왔던 종래의 연구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소수민족 노인들의 주거형태 결정에 경제적인 상황이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종래의 연구결과들에 미루어 보면,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사회복지개혁으로 영주권자들이 이전까지 받았던 보조적 보장소득(Social Supplemental Income: SSI)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sup>1)</sup>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1) 보조적 보장소득은 65세 이상 노인들, 시각 장애자들, 그리고 신체 불구자들 중 철저한 자산

의 소수민족 노인들이 영주권자인 경우가 많고, 이들 중 다수가 보조적 보장소득(SSI)에 삶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sup>2)</sup> 사회복지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소수민족의 영주권자 노인과 그 가족들일 것이다.<sup>3)</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영주권을 가진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사회복지개혁으로 인해 부딪히게 될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의 주거형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 2. 문헌 고찰

### 1) 전통적 가족주의(산업화 혹은 문화)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낮은 출산율, 증가하는 도시화, 사회적·지리적 이동,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의해서, 주거형태는 대가족에서 점차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다. 선진사회에서 핵가족은 이미 이상적인 가족형태가 된 지 오래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도 핵가족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효(孝)를 강조하는 유교적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

조사를 한 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복지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다. 수혜의 금액은 빈곤선(poverty line)을 넘지 않으며, 신축법(sliding scale)에 의한다. 사회복지개혁 이전의 경우, 이민자 노인들은 이민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보조적 보장소득을 비롯한 공적 부조의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SSI) 수혜자들은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빈곤한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무료 식품구입 쿠폰인 푸드스탬프(Food Stamp)가 주어진다. 혼자 살 경우, 100달러 이상의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주나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개 공공 교통요금 할인, 전화사용료 할인 등 생활기반에 대한 공적 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2) 1990년도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재미 한국 노인의 75.4%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영주권자 중 43.1%가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자이다(〈표1〉 참조).

3) 새로 개정된 사회복지법에서도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영주권자들은 계속 이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최근의 망명자들, 2)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여 65세 이후 은퇴시에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일종인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Income)를 오랜 기간동안 납부하였고, 그 기간동안 어떠한 공적 부조도 받지 않은 경우, (3) 미국 군대에서 명예롭게 제대한 전역군인.

아시아 노인들은 서구 선진사회보다는 확대가족내에서 살고 있는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심지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한 선진사회인 일본의 경우도, 서구 선진사회에 비해 노인들의 확대가족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5년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65%가 그들의 자녀들과 동거하고, 단지 10%만이 혼자 사는 반면,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nsella, 1955). 일본의 예는 산업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미치는 전통문화의 영향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온 아시아 노인들이 동화과정을 거쳐서 미국의 주된 주거형태인 노인 단독주거형태를 점차 따른다 하더라도, 효(孝) 사상의 전통을 토대로 한 유교문화의 영향에 의하여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의 이민자 노인들에 비해 그들의 전통적인 주거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 2) 동화과정

남미와 아시아 노인들은 모두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미국 노인들보다는 확대가족내에서 살고 있다.<sup>4)</sup> 60세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조사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백인 노인들 중에 대다수가 혼자 살거나(29.9%), 배우자와 함께 단독주거형태로 살고 있는(48.8%) 반면, 남미 노인들은 16.2%, 아시아 노인들은 10.0%가 혼자 살고 있으며, 배우자와 단 둘이서만 사는 경우도 각각 27.3%, 24.9%로 나타났다(Hime et al., 1996).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미국의 주류 문화의 가치관과 상충되고 이민자들의 자녀, 손자녀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미국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전통적인 가족내에서 이러한 변화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특히 사회적·지역적인 이동이나 타인종간의 결혼 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이민자들은 대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4) 대부분의 남미 국가와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다수 국민들은 카톨릭 신자들이다. 카톨릭 역시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사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간의 주거형태 분석에서 필리핀 영주권자 노인들의 확대가족 거주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Lee, 1997).

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지역적인 이동이나 타인종간의 결혼이라는 현상을 함께 동반하는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공헌하게 되고, 결국 노인들은 그들의 자녀나 손자녀들과는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Johnson, 1995).

더구나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노인들은 가끔은 자신들이 스스로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를 원하기도 한다(Koh & Bell, 1987). 대다수의 이민자 노인들이 여성이고 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데에는 세대간의 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복잡한 주거환경, 과도한 집안일(예를 들면, 식사 준비, 손자녀 돌보기 등 잡다한 가정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존슨(Johnson, 1995)에 의하면, 아시아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한 명의 성인자녀 가까이에서 살면서, 이들과 잦은 접촉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융통성있는 가족형태를 존슨은 '준(準)확대가족'(semi-extended family)이라 명칭하였다.

이민자 노인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이민온 지 10년 혹은 그 이상 되는 이민자들은 주거형태나 의료시설의 이용행태에서 미국인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례로 하와이와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 노인들 중에서 대다수의 미국태생 한국 노인들과 젊은 나이에 이민온 한국 노인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다(Pacific/Asian Elderly Project, 1977).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화과정은 이민자 노인들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완화시키며, 자의든 타의든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 3) 경제적 상황

안헬과 티엔다(Angel & Tienda, 1982)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흑인과 남미계통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확대가족제도는 가난한 환경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라카요(Lacayo, 1980) 역시 미국내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가난이라고 했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망명해온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연구한 트랜(Tran, 1991)은 이들의 주거형태는 경제적 적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크와 벨(Koh & Bell, 1987)은 한국 노인들은 자녀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살고 싶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조적 보장소득(SSI)과 정부 아파트의 임대보조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득은 집값이나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낮은 소득은 노인들이 1세대 노인 핵가족 혹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족·친지 혹은 타인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제약조건이다.

#### 4) 건강상태(신체기능적 능력)

##### (1)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노인 건강

노화과정을 겪는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의 쇠퇴와 정신적 안정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목욕, 옷입기와 같은 일상생활의 활동능력이 감소되어 타인의 도움을 요하게 된다. 종래 연구에 따르면, 건강악화와 신체적 기능의 약화는 주거형태의 변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Litwak & Longino, 1987; Wolf & Solo, 1988; Worobey & Angel, 1990; Longino et al., 1991; Speare et al., 1991; Bradsher et al., 1992).

리트워-론지노(Litwak-Longino) 모형은 노인들의 지리적인 이동을 세 가지 형태의 연속적인 이동으로 이론화하고 있다. 첫번째 단계로 사람들은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직장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두번째 형태의 이동은 노인들이 신체적 무능력을 경험하고 일상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받아야 할 경우에 일어난다. 혼자 살거나, 최근에 상처한 노인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주거형태나 주거지역을 바꿀 가능성이 훨씬 많다(Worobey & Angel, 1990; Bradsher et al., 1992; Angel & Angel, 1992). 워러베이와 안헬(Worobey & Angel, 1990: S95)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주거형태는 1) 계속해서 혼자 사는 경우, 2) 타인의 집으로 이사가거나, 타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경우, 또는 3) 양로원으로 가는 경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 형태의 이동은 가족이 있느냐 하는 것과 노인들의 신체적 불편함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이 더욱 더 악화될 경우이거나 돌봐줄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노인들은 최종적으로 양로원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신체적 무능력이나 건강 악화는 두번째와 세번째 유형의 이동에 선행하는 것이며, 노인들의 주거형태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2) 노인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거형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로 남미와 아시아에서 이민온 노인들의 주요 목적은 가족의 재결합이었다. 리트워-론지노모형은 주로 노인들이 왜 주거형태를 바꾸는지에 대한 이유를 퇴직과 건강의 악화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자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 모형에 따르면, 이민자 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확대가족내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거형태가 이민자 노인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 혹은 가족을 떠나 사는 것인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확대가족이 이민자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들은 가족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더 원할 수도 있다.

주거형태의 개념을 종종 가족관계와 혼동되어 사용해 왔으며, 후자는 주거형태와 가족관계란 상호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여기기도 한다. 알링(Arling, 1989)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은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지원의 적절함이나 사회적 통합의 감정 등이 인지될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는 동료집단과의 접촉빈도나 주거형태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갖는 경우이다. 많은 문헌에서 밝혀 왔듯이, 가족관계는 질적인 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 알링은 또한 양적인 경우는 단지 사회적 지원의 간접적인 척도에 불과한 반면, 사회적 지원의 질적인 요인이야말로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소수민족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가 이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비록 이전의 연구들이 확대가족이 언어, 문화, 그리고 의료체계 등의 면에서 미국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소외된 이민자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주거형태와 관련된 동화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민자 노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란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요하는 것이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직면해야 하는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확대가족이 이민자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단언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정신건강은 단순히 주거형태 자체



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과 좋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확대가족내에서 거주하는 이민자 노인들 중 일부는 세대간의 불화와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트랜(Tran, 1991)은 최근에 미국으로 건너온 인도차이나반도의 망명자 노인들은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냈고 그들의 미국화된 자녀들이나 손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뉴욕 시에 있는 한국 지역공동체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가족들과의 문화적 갈등뿐 아니라 복잡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집안일 때문에 70% 이상의 한국 노인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를 원했다(Koh & Bell, 1987). 다시 말하면, 뉴욕 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에게서는 확대가족이 그들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민족 지역공동체

키이(Kii, 1984)에 따르면, 중국 노인들은 그들의 지역공동체 밖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지역공동체내에서 혼자 사는 것을 더 선호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내에서는 자신들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지로 민족 지역공동체(Ethnic Community)는 “문화적 가치와 민족 규범의 강화를 통해서 집단의 응집력과 정체감을 강화시키는 인구학적인 틀”을 제공한다(Kii, 1984: 94). 문과 펄(Moon & Pearl, 1991)은 재미 한국 노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한국 지역공동체가 클수록, 그리고 단결의 정도가 강할수록 소외감을 덜 느낀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새로 이민온 사람들이 기존의 민족 지역공동체내에 거주함으로써 사회적 적응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민족 지역공동체내에서 이민자 노인들은 가족이나 같은 민족의 이웃 등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의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민족 지역공동체 밖에서는 가족이라는 오직 하나의 자원을 가질 뿐이다. 만약 그들이 미국화되어 버린 자녀들이나 손자녀들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경우, 민족 지역공동체 밖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지역공동체내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노인들보다 스트레스를 훨씬 더 받을 것이다(Kii, 1984).

### 3. 연구방법

#### 1) 연구 자료

이 논문의 자료는 1990년도 미국 센서스인 Population & Housing Public Use Microdata Sample (PUMS)의 8% 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sup>5)</sup> PUMS를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보조적 보장소득(Social Supplemental Income; SSI), 부양가족 보조금(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라는 점(Beau, Van Hook, & Glick, 1995)<sup>6)</sup> 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소수민족에 관한 정보를 다른 데이터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Himes et al., 1996).

#### 2) 연구 대상

65세 이상의 재미 한국 이민자들 중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주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이민 후의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 혹은 해외의 미국영토에서 태어난 노인들은 제외되며, 최근 미국내에서 있었던 사회복지개혁에 의해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던 종래의 사회보장혜택이 중단됨으로써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귀화 시민권자들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귀화한 시민권자 한국 노인들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전체 재미 한국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귀화한 시민권자 노인들과 미국태생의 노인들을 영주권자 노인들과 비교하여 <표1>에서 고찰하였다.

5) PUMS데이터의 sub sample은 1%, 3%, 그리고 5%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기존의 3%와 5% sub-sample을 통합한 것이다.

6)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들 중에는 경제적 요인으로서 보조적 보장소득(SSI)이 포함된다. 때문에 SSI가 포함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PUMS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조적 보장소득뿐이다.

### 3) 연구 가설

- 가설1: 동화과정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재미 한국 노인들의 확대가족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가설2: 경제적 독립(예: 개인 수입이나 보조적 보장소득 등)은 재미 한국 노인들의 단독주거(독신 혹은 1세대 노인 핵가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 가설3: 건강의 악화는 재미 한국 노인들의 단독주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가설4: 재미 한국 노인들은 한국 지역공동체(Korean community)에 더 많이 거주할 것이다.
- 가설5: 한국 지역공동체내에서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 가족 외에도 많기 때문에 재미 한국 노인들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가설의 검증을 통하여 동화과정, 경제적 상황, 건강, 민족 지역공동체 등 주요 변인들이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 결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4) 변수 설명

#### (1)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주거형태와 민족 지역공동체의 거주여부가 있다. 주거형태는 우선 지역사회 거주(community residence)에 한하였다. 시설보호(institution)에 있는 한국 노인들의 경우는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형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표1〉 참조). 주거형태는 첫째로 가구 구성원의 수를 토대로 한다. 또한 결혼상태가 주거형태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유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무배우자: 이혼, 별거, 사별, 그리고 미혼 등을 포함)로 먼저 나누었다.<sup>7)</sup> 유배우자 노인들을 다시 두 가지

7) 노인들의 경우,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매우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가족과 따로 사는 노인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일상생활의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의 주거형태를 바꾸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Angel et al., 1992). 반

〈표1〉 65세 이상의 재미 한국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특성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미국태생(%)
나이			
65-74	70.2	73.5	77.1
75-84	26.6	22.4	21.1
85+	3.3	4.0	21.1
남성	32.1	11.2	46.6
종족 이하			
고등학교-대학교	61.1	37.6	28.2
대졸 이상	28.0	37.6	28.2
대졸 이상	7.8	42.0	59.4
유배우	15.4	51.3	56.9
이민온 시기			
1950년 이전	1.3	5.3	
1950년대	0.2	7.6	
1960년대	1.7	12.2	
1970년대	30.4	51.1	
1980년대	66.5	20.8	
이민연령			
20대 이하	1.4	6.2	
30-40대	11.3	15.6	-
50대	14.9	34.0	
60대 이상	42.4	14.2	-
영어 구사능력			
가능	12.3	41.2	72.2
SSI 수령여부			
수령함	43.1	32.8	11.6
개인수입			
\$5,000 이하	51.1	34.5	21.2
\$5,001-10,000	39.0	32.3	23.2
\$10,001 이상	9.9	33.2	55.6

면에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심각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현재의 주거형태를 바꿀려는 경향이 있다(Litvak & Longino, 1987; Longino et al., 1991; Worobey & Angel, 1990).

〈표1〉 65세 이상의 재미 한국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계속)

특성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미국태생(%)
자녀수*			
무자녀	4.6	7.9	11.1
한 명·두 명	15.2	24.1	42.4
세 명 이상	80.2	68.0	46.4
외출활동 제한			
제한받음	20.1	18.6	11.3
시설보호에 거주	0.7	3.0	2.8
주거형태			
유배우자인 경우			
노인 핵가족	38.4	46.0	55.1
확대가족**	61.6	54.0	45.0
무배우자인 경우			
독신	22.7	46.0	59.8
확대가족**	77.3	54.0	40.2
계	1,858	382	223
%	75.4	15.5	9.1

자료: Public Use Microdata Samples(PUMS), 1990; 8% 표본.

주: \* 자녀수에 대한 질문은 여성 응답자에 한함.

\*\* 미혼자녀나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도 확대가족의 범주에 포함.

주거형태로 분류하였다: 1) 노인 부부만이 살고 있는 경우(1세대 노인 핵가족으로 두 명의 가구 구성원)와, 2) 노인 부부가 가족이나 친지 혹은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세 명 혹은 그 이상의 가구 구성원). 마찬가지로 무배우자 노인들도 1) 혼자 사는 경우(독신가구로서 한 명의 가구 구성원)와, 2) 가족이나 친지 혹은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가구 구성원)의 두 가지 주거형태로 분류하였다.<sup>8)</sup>

8) 미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주거형태는 '2세대 노인핵가족'으로 단독주거형태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지만(장인협·최성재, 1994: 189),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이 단독주거형태, 즉 독신 혹은 1세대 노인 핵가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외의 경우, 즉 가족·친지 혹은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는 이분법적인 주거형태에 기초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2세대 노인 핵가족의 경우는 단독주거형태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는 엄격히 확대가족과는 다른 성격의 주거형태지만, 편의상 단독주거형태가 아닌 경우를 확

두번째 종속변수는 민족 지역공동체의 거주 여부이다. 불행히도, PUMS데이터는 민족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방법론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이 데이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소 지역단위인 PUMA<sup>9)</sup>를 이용하여, 민족 지역공동체 개념을 조작화하였다. 민족 지역공동체는 가설4에 대한 종속변수로 사용되며, 가설5에서는 재미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로 사용된다.

## (2) 독립변수

주요 독립변수들로는 동화과정,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있으며, 연령, 성별, 결혼상태, 자녀수, 그리고 교육 등은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동화과정은 이민은 연령과 영어구사능력으로 측정하였다. 젊은 나이에 이민을수록 주류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더 크고,<sup>10)</sup>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나수록 미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응력이 더 크다는 전제가 있었다. 건강상태는 외출활동과 일상생활능력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였다. 첫번째 질문은 “지난 6개월간 혼자서 쇼핑하거나, 병원에 가는 등 외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였고, 두번째는

대가족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2세대 노인 핵가족과 더불어 확대가족에 포함시켰다.

9) PUMS데이터에는 Public Use Microdata Areas(PUMA)라는 지역단위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군(郡)에 해당하는 미국의 행정지역단위, 즉 county와 동일하며, 규모가 작은 county나 도시들은 100,000명의 거주인구가 되도록 함께 묶어서 하나의 PUMA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PUMA는 인구비에 의해 다시 세분된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시(市)의 PUMA번호는 019이며, 이 지역내에는 여섯 개의 세부지역이 있다. 즉 01901에서 01906으로 표기되며, 최소 지역단위인 이들 세부지역내에 전체 한국인들의 수가 많을수록, 이 지역에 한국 지역공동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10) Life-course perspective에 따르면, 적응력은 유아기에 가장 높고, 노년기에 가장 낮다고 한다. 때문에 유아기나 청년기에 이민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이민은 사람들보다는 주류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력에 의해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거나, 주류문화의 제도하에서 일을 배우거나,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Gelfand & Barresi, 1987). 그러므로 동화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종래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민은 시기보다는 어느 연령기에 이민을 왔는가 하는 이민연령이 동화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60세에 이민와서 20년을 미국에서 보낸 80세의 노인보다는 40세에 이민온 현재 65세의 노인이 훨씬 더 많이 미국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이민온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이민온 사람들보다 미국에 더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동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동화 정도 또한 더 깊을 수 있다.

“지난 6개월간 옷을 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혹은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는가?”하는 것이다.<sup>11)</sup> 경제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SSI)의 수혜여부를 조사하였다. 특히 주거형태에 대한 보조적 보장소득의 영향력을 조사하려는 것은 보조적 보장소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적 부조를 중단시킨 새로운 복지정책이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 결정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AS(Strategic Applications Software)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주거형태가 두 범주만을 가지고 있는 이분변수이기 때문에 대수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재미 한국 노인들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주거형태의 상관성은 이진연령의 통제하에 교차제표를 작성하여  $\chi^2$ 검정으로 살펴 보았다.

### 4. 연구결과 및 고찰

#### 1) 재미 한국 노인의 일반적 특성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 분석에 앞서, 전체 재미 한국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먼저 알아보았다. <표1>은 한국 노인들을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별로 나누어 이들 세 집단의 특성들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스의 8% 표본에서 조사된 한국 영주권자들은 총 1,858명으로 65세 이상의 한국 노

11) 카츠(Katz)의 ADL측정에 따르면, 일상생활 활동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목욕하기, 옷입기, 식사하기, 외출하기, 의자에 앉고 일어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측정한다(Katz et al., 1963). 이 측정방법은 노인들의 단독주거를 결정하는 건강상태의 척도로 많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기능적 일상생활의 기능적 활동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은 사회활동성에 대한 건강척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식사준비, 쇼핑하기, 금전 관리, 전화 사용, 그리고 가사일 하기 등을 측정한다(Lawton, 1971).

인들 중에서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귀화한 시민권자의 경우는 382명으로 15.5%, 그리고 미국태생의 한국 노인은 223명으로 9.1%를 구성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들은 연령, 성별, 교육, 결혼상태, 이민온 시기, 이민온 연령, 영어구사능력,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여부, 자녀수, 건강상태, 시설보호 거주여부, 그리고 주거형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분포는 65세에서 74세까지 비교적 젊은 노인(young-old)들이 65세 이상의 전체 재미 한국 노인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태생의 노인들이 이민온 노인들(영주권자이든 귀화 시민권자이든지)보다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 노인들이 더 적고, 특히 영주권자 노인들의 경우 귀화 시민권자나 미국태생 노인들보다는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교육정도는 영주권자 노인들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이 64.1%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귀화한 한국노인들이 42.0%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국태생 노인들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반면(56.9%), 영주권자 노인들은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45.4%). 대부분의 이민자 노인들은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에 이민온 경우이며, 영주권자의 96.9%, 귀화한 시민권자들의 74.9%가 1970년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왔다. 더불어 영주권자들의 87.3%는 50대 이후의 연령에 이민온 반면, 귀화한 시민권자들의 이민연령은 30-40대가 45.6%, 50대 이후가 48.2%를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이민온 한국 노인들 중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노인들이 시민권을 소지한 노인들보다 늦은 나이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온 것을 알 수 있다. 영어구사능력은 미국태생의 한국노인들이 월등히 높으며, 귀화한 시민권자들도 44.2%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영주권자들의 경우 12.3%만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일년간 개인수입은 55.6%의 미국태생 한국 노인들이 10,001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응답한 반면, 귀화 시민권자는 33.2%, 영주권자는 9.9%만이 10,001달러 이상의 개인 수입이 있었다. 한편 영주권자의 51.1%가 5,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수입에 해당하였다. 또한 저소득 계층에 부여하는 보조적 보장소득(SSS)은 영주권자 노인들의 43.1%가 지난 일년간 혜택을 받았고, 귀화 시민권자들은 32.8%, 그리고 미국태생의 한국노인들은 11.6%만이 수혜자였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자 한국노인들은 귀화 시민권자나 미국태생 한국 노인들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혜택에 더 의존적이었다. 자녀수에 대한 질문은 여성들에게



만 국한되었다.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미국태생의 한국 노인이 가장 많았던 반면, 영주권자 노인들 중 80.2%가 세 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묻는 두 가지 질문 모두에서 영주권자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일상생활 혹은 외출활동 일부를 제한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양로원과 같은 시설보호(institution)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노인들은 0.7%에 불과한 반면, 귀화 시민권자나 미국태생 한국노인들은 각각 3.0%, 2.8%가 시설보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노인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백인(5.5%)이나 흑인(4.7%)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Lee, 1997, 미간행, Table 4.1). 마지막으로 주거형태에서 배우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영주권자 노인들이 귀화 시민권자나 미국태생 한국노인들보다는 확대가족에 거주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무배우자의 경우, 영주권자 노인들의 22.7%가 독신인 데 반해 미국태생 한국노인들은 무려 59.8%가 혼자 산다고 응답했다.

〈표2〉는 시민권 유무에 따른 재미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의 공산비(odds ratio)를 무배우자와 유배우자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표2〉에 따르면, 무배우자 한국 노인들의 경우, 귀화 시민권자들이 영주권자들보다 두 배 이상 독신으로 살고 있으며, 미국태생의 한국 노인들은 귀화 시민권자들의 두 배 이상 혼자 살고 있었다. 유배우자의 경우는 귀화 시민권자들이 영주권자들보다 약 20% 이상, 미국태생의 한국 노인들은 귀화 시민권자들보다 약 13% 이상 1세대 노인 핵가족으로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자 노인들이 귀화 시민권자 혹은 미국태생 한국 노인들보다 확대가족내에 살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무배우자 노인들이 유배우자 노인들보다 확대가족내에 사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자 한국노인들은 다른 한국노인들보다는 연령분포가 높고, 여

〈표2〉 재미 한국 노인들의 시민권 지위에 따른 주거형태의 공산비

	무배우자 노인들 (독신주거)	유배우자 노인들 (1세대 노인핵가족)
영주권자	0.41**	0.78***
미국태생	2.20**	1.13***

자료: Public Use Microdata Samples(PUMS), 1990; 8% 표본.

주: 준거범주는 귀화시민권자 한국노인임.

성이 많으며, 교육수준이 낮다. 또한 반 이상이 배우자가 없으며, 대부분은 낮은 나이에 비교적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경제적으로도 낮은 개인수입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도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잠재적 부양자가 되는 자녀의 수는 다른 한국 노인들에 비해 많았고, 가족·친지 혹은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무배우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 2) 시민권 유무에 따른 재미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 차이에 관한 분석

〈표1〉과 〈표2〉에서 본 바와 같이, 재미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도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등 세 집단을 한 집단으로 혹은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 노인들을 단순히 이민자 노인으로 간주하기에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주거형태의 차이점에 대한 종래의 연구들은 동화(혹은 이민) 연령의 효과라고 단정해 왔었다. 즉 귀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주거형태의 차이는 귀화 시민권자들이 대부분 더 일찍, 젊은 나이에 미국에 이민왔기 때문에 동화과정의 더 빠르게 진행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민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두 집단의 주거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3〉은 이민연령별로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단독 거주비율을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한국 노인들로 각각 나누어 조사한 것이다. 분석결과 50대에 이민온 유배우자 한국 노인들의 경우, 주거형태와 시민권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이민연령대에서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유배우자의 경우 50대에 이민온 한국 노인들 사이에는 시민권의 취득 여부와 그들의 주거형태결정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무배우자의 경우, 30-40대에 이민온 노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는 시민권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sup>12)</sup> 이와 같은 양상은 다른 아시아 노인들 — 중국, 필리핀, 그리

12) 이 경우도 만약 유의수준을 0.10으로 할 경우 임계치인 2.71을 넘어서는 3.31의  $\chi^2$  값을 갖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된다. 즉 신뢰도 90%내에서는 모든 무배우자 한국 노인들은 이민연령과는 상관없이 시민권 유무와 주거형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 〈표2〉에서 설명되었듯이, 무배우자 노인들의 주거형태가 시민권 유무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민연령에 의한 효과, 다시 말해서 동화의 효과가 아닌 다른 이유로써 설명이 되어야 한다.

〈표3〉 이민연령에 따른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 한국 노인들 간의 주거형태 비교

	이민연령			
	20대 이하	30-40대	50대	60대 이상
	%	%	%	%
1세대 노인 핵가족				
영주권자	33.3	39.3	32.2	42.6
귀화 시민권자	50.0	41.9	49.2	48.4
$\chi^2$	0.27	0.15	7.00*	0.39
자유도	1	1	1	1
N	15	227	473	360
독신거주(무배우자의 경우)				
영주권자	16.7	30.3	21.0	18.1
귀화 시민권자	55.6	44.6	38.3	38.5
$\chi^2$	4.35*	3.31	8.79**	6.55**
자유도	1	1	1	1
N	27	154	469	489

주: \*  $p < .05$ , \*\*  $p < .01$

자료: Public Use Microdata Samples(PUMS), 1990; 8% 표본

고 베트남 — 사이에서도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Lee, 1997, 미간행, Appendix 2.1, 2.2, 2.5). 이러한 발견은 이민자 노인들 사이에서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주거형태의 차이가 단순한 동화과정의 차이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동기나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혹은 능력의 개인차이는 교육수준, 개인수입, 그리고 동화과정 등 단순한 인구학적 변인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소수민족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에 관한 실증적·이론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 노인들을 단순히 이민자 노인이라는 한 집단으로 간주해 왔던 종래 연구결과들은 신뢰성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3)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 분석 결과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독립변인들로는 동화과정(이민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능력(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령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다.

〈표1〉은 65세 이상의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을 유배우자와 무배우자로 분류하여, 민족 지역공동체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대수회귀(Logistic Regression)로 분석한 결과이며, 더불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 (1) 통제변수의 효과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 연령이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준거범주인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들이 가족·친지 혹은 타인들과 함께 사는 대신에 독신으로 사는 공산비(odds ratio)를 1.00이라고 했을 때, 85세 이상의 한국 노인의 공산비는 0.75를 나타냈다. 즉,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oldest-old)이 비교적 젊은 노인들(young-old)보다 확대가족내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에 관한 분석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한국 노인들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보다 20% 더 확대가족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 노인들이 남성들보다는 약 40% 정도 더 독신보다는 가족·친지 혹은 타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과 떨어져 배우자와 둘이서만 사는 경우가 더 많았다. 85세 이상의 노인들(oldest-old)은 65-74세의 노인들(young-old)에 비해 세 배 가까이 1세대 노인 핵가족에서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아시아 노인들이 50대 이후의 나이에,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1990년 센서스에는 이들 노인들은 65-74세의 연령분포에 속하게 된다(〈표1〉 참조). 다시 말해서 젊은 노인들의 대다수가 비교적 최근에 이민은 경우에 속하며, 이들의 이민 목적이 가족의 재결합이고, 미국의 주류생활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일 것이다. 때문에 젊은 노인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무배우자의 경우 85세 이상의 노인들이 오히려 확대가족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들 대다수가 여성

〈표4〉 65세 이상의 한국 노인 영주권자들의 주거형태에 관한 대수회귀공산비

	무배우자 노인들 (독신거주)	유배우자 노인들 (1세대 노인 핵가족)
Old-old (75-81세)	1.01	1.15**
Oldest-old (85세 이상)	0.75*	2.89***
(준거범주=young; 65-74세)		
고등학교-대학교	0.80***	0.88***
대학교 이상 졸업	0.94	1.08
(준거범주=중졸 이하)		
여성	0.62***	1.38***
영어구사		
가능함	0.74***	1.68***
이민연령		
50대	0.60***	0.78***
60대 이상	0.55***	0.96
(준거범주=이민연령 10대 이하)		
SSI 수령함		
개인수입	2.36***	2.90***
10,001달러 이상	0.80	1.62***
5,001-10,000달러	3.63***	2.11***
(준거범주=개인수입, 5,000달러 이하)		
외출활동 제한받음	0.59***	0.83***
일상생활활동 제한받음	1.21***	1.27***
계	979	861
-2log likelihood chi-square	1,786.34	1,322.73
자유도	13	13

주: \*  $p < .10$ , \*\*  $p < 0.05$ , \*\*\*  $p < 0.01$

자료: Public Use Microdata Samples (PUMS), 1990; 8% 표본.

들이며, 여성 노인들의 확대가족 거주비율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나이에 대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성별에 의한 효과라고 설명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거주형태의 결정에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주거형태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노인들이 가장 많이 확대가족내

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배우자 노인들 중에서 주거형태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이 가족과 떨어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 응답자들보다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의해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앞에서 분석한 주거형태에 대한 연령의 효과와 남자가 여자 배우자보다 나이가 많다는 일반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들이 65세에서 74세에 분포되어 있다.<sup>13)</sup> 결혼한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그 배우자는 이 범주에 속하거나 더 젊을 가능성이 크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이 젊은 노인 범주에 속하거나 그 이상의 연령 범주(old-old 혹은 oldest-old)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남성 응답자의 커플이 여성 응답자 커플보다 더 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젊은 노인들일수록 가족과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령의 효과와 결부시켜 보면, 나이가 더 많은 여성 응답자 커플이 1세대 노인 핵가족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 (2) 동화과정의 효과

동화과정을 측정하는 변인들로는 영어구사능력과 이민연령이 있다. 먼저 주거형태 결정에서 영어구사능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무배우자 한국 노인들은 오히려 영어구사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연령을 보면, 전반적으로 늦은 나이에 이민온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40대 이전에 이민온 노인이 독신으로 사는 확률을 1.00이라고 했을 때, 50대 혹은 60대 이상의 나이에 이민온 노인들이 혼자 살 확률은 각각 0.60과 0.55였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에 이민온 한국 노인들은 40대 이전에 이민온 노인들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이 가족이나 친지 혹은 타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무배우자 한국 노인들이 혼자 사는 데 있어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이민연령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배우자 노인들 중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노인들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았으며, 늦은 나이에 이민온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다시 말해서, 동화과정은 유배우자 한국 노인들이 1세대 노인 핵가족에 거주

13) 영주권자 한국 노인들의 경우, 70.2%가 65세에서 74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표1) 참조.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배우자 노인들은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지만, 유배우자 노인들은 영어구사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한국 노인들의 경우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하여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영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영주권자 노인들의 약 90% 정도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무배우자 노인들이 한국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높은 독신주거비율을 보였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무배우자 한국 노인들이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어구사능력은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조적 보장소득이 이민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수혜자격이 주어진다는 점(Treas, 1997)과 영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어도 혼자서 살 수 있는 적응력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유의미하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무배우자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 분석에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미국 주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게 하는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 후에 주어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격 획득과 그 지역공동체의 주변 환경을 익히고, 한국 사람들을 사귀어 독신으로 살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까지 필요한 적응기간으로 해석된다.

### (3) 경제적 요인의 효과

무배우자의 경우 개인수입이 높은 노인들일수록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개인수입이 있는 노인들이 5,000달러 이하의 개인수입이 있는 노인들보다 3배 반 이상 혼자 사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0,001달러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5,000달러 이하의 낮은 개인수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과 비교해 볼 때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유배우자 노인들의 경우도 무배우자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개인수입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1세대 노인 핵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10,001달러 이상의 비교적 고소득의 노인 부부들은 오히려 5,000달러에서 10,000달러의 개인소득이 있는 부부보다도 확대가족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수입과 단독주거의 관계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적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확대가족 선호경향은 경제적 차원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거형태에 대한 보조적 보장소득(SSI)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무배우자의 경우,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자들은 비수혜자 노인들보다 거의 두 배 반 가까이 독신으로 살고 있었으며, 유배우자의 경우는 무려 3배 가까이 단독주거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재미 한국 노인 영주권자들의 보조적 보장소득(SSI)의 수혜율이 정치적 망명자인 베트남 노인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노인들보다 훨씬 높으며,<sup>11</sup>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보조적 보장소득(SSI)이 한국 노인들의 단독주거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영주권자들에게 부여되던 대다수의 공적 부조를 중단한 사회복지개혁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재미 한국 노인 영주권자와 그 가족들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사회복지법에서 영주권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1)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2) 스스로 직업을 구하거나, 3)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4)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일 것이다(Treas, 1997: 19). 직업을 구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일은 노년기에 이민 와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에게는 힘겨운 일이며, 한국에서 생활터전을 털어 버리고, 자녀와 친지가 있는 미국으로 이민 온 노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결국 가족들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 (4) 건강상태의 효과

건강에 대해 분석은, 배우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외출활동에 제한이 있을 정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가족·친지 혹은 타인과 함께 사는 비율이 단독주거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예상과는 달리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단독주거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이 쇠퇴해질수록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경향을 보인다는 종래의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세

11) 재미 한국 노인 영주권자들의 13.1%가 보조적 보장소득(SSI)을 수령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정치적 망명자인 베트남 노인(55%)과 캄보디아 노인(51.7%)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의 노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비율이다 -- 중국(35.5%), 필리핀(35.4%), 일본(30.4%) (Lee, 1997, 미간행).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전 연구들의 대상은 주로 백인, 흑인, 그리고 남미 노인들이었다(Bishop, 1986; Litwak & Longino, 1987; Angel, 1991; Angel et al., 1992). 때문에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어도 단독주거를 더 선호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인종의 노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을지라도,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에게는 사실일 수 있다. 둘째로, 건강상태를 조작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 1980년도 PUMS데이터를 사용하여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대한 건강상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 중에서도 모순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카모와 조우(Kamo & Zhou, 1994)는 65세 이상 중국과 일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들이 확대가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무능력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버와 머첼러(Burr & Mutchler, 1993)는 55세 이상의 일본과 필리핀 독신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강상태는 이들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주요한 예측요인이 된다고 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연구결과는 먼저 그 연구대상과 건강상태를 조작화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점에 있다.<sup>15)</sup> 본 연구 역시 앞의 두 연구와는 다른 연구대상과 건강에 대한 조작화 정의가 사용되었다. 즉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65세 이상인 한국 영주권자 남녀노인이며, 센서스를 이용한 이전의 어떤 연구들도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 없다. 또한 건강에 대한 조작화 정의로는 외부활동 능력과 일상생활 능력에 관한 두 가지 질문사항을 이용하였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질문은 1990년도 센서스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은 센서스에 나타나 있는 건강에 대한 질문사항들이 일관되지 않고, 건강상태를 측정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것도 커다란 요인이 된다.

#### (5) 민족 지역공동체의 효과

〈표5〉는 아시아 영주권자 노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sup>16)</sup>

15) 카모와 조우가 사용한 건강상태의 측정은 세 가지의 신체적 무능력이었다: 1) 일하는 데 있어서의 활동능력 제한, 2)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활동능력 제한, 3)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활동능력 제한. 반면 버와 머첼러는 단지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활동능력 제한정도만을 건강상태의 조작화로 측정하였다.

16) 1990년도 센서스에 따르면, 6개국 아시아 영주권자 노인들 중 55%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노인들의 57.6%, 일본 노인들은 47.8%, 필리핀 노인들은 56.7%, 한국 노인들은 46.5%, 그리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노인들은 각각 58.1%와 53.8%가

〈표5〉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한국노인 영주권자들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거형태의 공산비

	유배우자 노인	무배우자 노인	%
	노인 핵가족	독신	
고밀도 PUMAs <sup>a</sup>	1.06	2.45***	40.8*
중밀도 PUMAs <sup>b</sup>	0.45***	1.50**	11.4*
저밀도 PUMAs <sup>c</sup>	0.79***	2.48**	26.6*
준거범주 <sup>d</sup> (최저밀도 PUMAs)			21.2
계	449	411	100.0
-2log likelihood	78.34	128.42	
$\chi^2$			
자유도	3	3	

자료: Public Use Microdata Samples (PUMS), 1990; 8% sample.

주: \*  $p < .10$ , \*\*  $p < .05$ , \*\*\*  $p < .01$

- a: 센서스에 나타난 총 한국인구가 100명 이상인 PUMA들
- b: 센서스에 나타난 총 한국 인구가 50명에서 99명 사이인 PUMA들
- c: 센서스에 나타난 총 한국인구가 25명에서 49명 사이의 PUMA들
- d: 준거범주는 센서스에 나타난 총 한국인구가 24명 이하의 PUMA들

PUMA별로 나누어서 전체 한국 사람들의 인구밀도에 따라서 PUMA들을 다시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고밀도 PUMA범주는 한국 사람들이 100명 이상인 PUMA들의 집합이고, 최저밀도 PUMA범주는 한국 사람들이 센서스상에 24명 이하만이 거주하는 PUMA들을 일컫는다.<sup>17)</sup> 한국 사람들이 적게 살고 있는 지역보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국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었다(Lee, 1997, 미간행, Table 6.3).

17)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전체 1990년 PUMS 센서스의 8%에 해당되는 sub-sample이다. 때문에 센서스에 나타난 100명은 실제로 1,25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그리고 준거범주인 최저밀도 PUMA를 결정짓는 총 한국 인구의 범위는 임의로 구분되어졌다.

를 바탕으로 민족 지역공동체를 조각화한 것이다.

〈표5〉의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 중 약 41%가 고밀도 PUMA지역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저밀도와 준거범주인 최저밀도 PUMA지역에도 약 48%나 살고 있었다. 즉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지역도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이 한국 지역공동체에 더 많이 거주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1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지역공동체가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데 일관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준거범주인 최저밀도 PUMA지역에 1세대 노인 핵가족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 지역공동체가 아닌 지역에서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에는 고밀도 PUMA지역과 저밀도 PUMA지역에서 독신주거형태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국 민족 지역공동체로써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설명하기에는 통계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단독주거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한국 노인들의 거주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에 전체 한국 노인들의 40%가 고밀도 PUMA지역에 살고 있고, 독거 노인들의 비율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 저밀도 PUMA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거주비율은 26.6%에 해당되며, 이 지역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최고로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일수록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단둘이서 사는 노인들이 많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한국 노인들이 보조적 보장소득(SSI)과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고 있고, 정부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sup>18)</sup> 이들 아파트는 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지역공동체가 도심보다는 교외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 노인들

18) 연방정부의 빈곤층을 위한 월세 보조금(Section 8)은 노인들이 시중의 아파트 월세금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를 보조하는 사회보장서비스로서 노인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의 월세를 보조한다. 주(州)에 따라서 Section 8을 대체하여 공공주택 프로그램(Public Housing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62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저렴한 월세의 정부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50,000개 이상의 정부 임대아파트가 설치되어 있다(월간 《코리안 저널》, 1997, 6월호, p. 24).

이 한국 지역공동체가 아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단독주거 비율도 높다는 연구결과는 한국 노인들의 주거형태의 결정에서 지역공동체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에 의한 경제적인 요인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무배우자 한국 노인들이 한국 지역공동체내에서도 높은 비율로 독신주거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가설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내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이 무배우자 한국 노인들의 단독주거에는 긍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 Samples(PUMS)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이민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난 일년간 개인수입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인 노인들이 단독주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보조적 보장소득이 빈곤선

(poverty line)<sup>19)</sup>을 초과하여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개인수입의 주요 소득원이 바로 보조적 보장소득일 가능성이 크다(Treas, 1997). 때문에 10,001달러 이상의 비교적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한국 노인들은 보조적 보장소득이 아닌 경제활동에 의한 개인수입이라고 해석되며, 이들이 5,001달러에서 10,000달러의 개인수입을 가지고 있는 한국 노인들보다 오히려 확대가족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가족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확대가족내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재미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도 보조적 보장소득이 효자(孝子) 노릇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도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월간 《코리아 저널》, 1997, 6월).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세 배 이상 단독주거형태에 거주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은 지역공동체 외의 지역에도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연방정부나 주(州)에서 재정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한국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영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내에서 가족과의 갈등이나 과도한 집안일 때문에, 혹은 경제적 부담을 자녀들에게 주기 싫어서 단독주거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Koh & Bell, 1987; Lee, 1997: 119). 하지만, 한국 지역공동체내에 거주하는 무배우자 노인들의 단독주거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공동체내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이 무배우자 노인들이 독신으로 살아

19) 1989년도 빈곤선(poverty line)은 65세 이상 독거 노인의 경우 5,947달러이며, 1세대 노인 핵가족을 이루는 노인부부가 모두 65세일 경우 7,501달러이다. 결국 보조적 보장소득으로 살아가는 독거 노인은 한달에 약 495달러를, 1세대 노인 핵가족일 경우 625달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다.

가는 데 어떠한 형태로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족 지역공동체에 대한 분석이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전체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실상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주거형태를 바꾸었는지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가 더 적절한 방법이다. 하지만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를 통해서도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센서스를 이용한 연구는 표본이 크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질문 사항이 없을 경우, 연구의 한계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 민족 지역공동체의 조작적 정의가 방법론적으로나 논리적 전개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상태에 따라 주거형태 결정과정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힌 것도 본 연구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표4>와 <표5>에서 보여진 것처럼,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서로 다른 주거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비록 같은 주거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산비(odds ratio)의 변동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독신이나 1세대 노인 핵가족 가구가 재미 한국 노인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노인들이 주거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무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노인 주거에 관한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참고문헌

- 월간 코리아 저널(1997, 6월호), *Korean Community Journal*, INC.
- 장인협·최성재(1994), 《노인 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Alston, Letitia T. and Benigno Agurre(1988), "Elderly Mexican American: Nativity and Health Acc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xxi: 626-642.
- Angel, Jacqueline Lowe(1991), *Health and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 Angel, Ronald J. and Marta Tienda(1982), "Determinants of Extended Household Structure: Cultural Pattern or Economic Ne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1360-1383.
- Angel, Ronald J., Jacqueline L. Angel, and Christine L. Himes(1992), "Minority Group Status, Health Transitions and Community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Elderly", *Research Aging* 14: 496-521.
- Angel, Jacqueline Lowe and Ronald Angel(1992), "Age at Migration, Social Connections and Well-Being Among the Elderly Hispanic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4: 480-499.
- Arling, Greg(1989), "Strain, Social Support, and Distress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44: 107-113.
- Barresi, Charles M. (1987), *Ethnic Aging and the Life Course*, edited by Donald E. Gelfand and Charles M. Barresi,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Bean, Frank D., Jennifer V.W. Van Hook, Jennifer E. Glick(1995), "Mode-of-Entry, Type of Public Assistance and Patterns of Welfare Reciprocity Among U.S. Immigrants and Natives", Population Research Center,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Working paper Series 94-95-17.
- Beland, Francois(1984) "The Decision of Elderly Persons to Leave Their Homes", *The Gerontologist* 24: 179-185.
- Bishop, Christine(1986), "Living Arrangement Choices of Elderly Singles: Effects of Income and Disability",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7: 65-73.
- Blend, Francois(1984), "The Decision of Elderly Persons to Leave Their Homes", *The Gerontologist* 24: 179-185.

- Boyd, Monica(1990), "Immigration and Living Arrangements: Elderly Women in Canada", *IMR* xxv: 4-27.
- Bradsher, Julia E., Charles F. Longino, Jr., David J. Jackson, and Rick S. Zimmerman(1992), "Health and Geographic Mobility Among the Recently Widowed",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7: S261-S268.
- Burr, Jeffrey A. (1990), "Race/Sex Comparisons of Elderly Living Arrangements", *Research on Aging* 12: 507-530.
- Burr, Jeffrey A. and Jan E. Mutchler(1993) "Nativity, Acculturation, and Economic Status: Explanations of Asian American Living Arrangements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8: S55-S63.
- Chi, Peter S.K. and Kyung-Hye Kim(1995), "A Comparative Study of Living Arrangements Among White, Black, Hispanic, and Asian-American Elderly in the U.S.", Cornell University Working Paper Series 95.04.
- Gelfand, Donald E. and Alfred J. Kutzik(1976), *Ethnicity and Aging: Theory, Research, and Polic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Gelfand, Donald E. and Barresi M. Charles(1987), *Ethnic Aging and the Life Cours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Hime, Christine, Dennis P. Hogan, and David J. Eggebeen(1996), "Living Arrangements of Minority Eld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51B: S42-S48.
- Hooyman, Nancy R. and H. Asuman Kiyak(1993), *Social Gerontology*, Boston, MA: Allyn and Bacon.
- Johnson, Colleen(1995), "Cultural Diversity in the Late-Life Family",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edited by Rosemary Blieszner and Victoria Hilkevitch Bedford: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Kamo, Yoshinori and Min Zhou(1994),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Chinese and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3): 544-558.
- Katz, S., A.B. Ford, R.W. Moskowitz, B.A. Jackson, and M.W. Joffe(1963), "Studies of Illness in the Aged: The Index of ADL, a standardized measure of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5: 914-919.
- Kiefer, Christie W., Sung Kim, Kay Choi, Luke Kim, Bok-Lim Kim, Steven Shon, and



- Tom Kim(1985), "Adjustment Problems of Korean American Elderly", *The Gerontologist* 25: 477-482.
- Kii, Toshi(1984), "Asians", pp.201-218 in *Handbook on the Aged in the United States*, edited by E. Palmore.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Kinsella, Kevin(1995), "Aging and the Family: Present and Future Demographic Issue",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edited by Rosemary Blieszner and Victoria Hillekevitch Bedford;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Koh, James Y. and William G. Bell(1987), "Korean Elders in the United States: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Living Arrangements", *The Gerontologist* 27: 66-71.
- Lacayo, Carmela G. (1980), *A National Study to Assess the Service Needs of the Hispanic Elderly*, Los Angeles, CA: Association Nacional Per Persons Mayores.
- Lawton, M.P. (1971),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Elderly People: Self-maintain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Gerontologist* 9: 465-481.
- Lee, Geum-yong(1997),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Asian Non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i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Litwak, Eugene and Charles F. Longino, Jr. (1987), "Migration Patterns Among the Elderl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27: 266-272.
- Longino, Charles F., Jr., David J. Jackson, Rick S. Zimmerman, and Julia E. Bradsher(1991), "The Second Move: Health and Geographic Mobili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6: S218-S224.
- Moon, Jeong-Hwa and Joseph H. Pearl(1991), "Alienation of Elderly Korean American Immigrants as Related to Place of Residence, Gender, Age, Years of Education, Time in the U.S., Living with or without Children, and Living with or without a Spou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2: 115-124.
- Mutchler, Jan E. (1990), "Household Composition among the Nonmarried Elderly", *Research on Aging* 12: 487-506.
- Pacific/Asian Elderly Research Project(1977), *Census and Baseline Data: A Detailed report*, Log Angeles. CA: Pacific/Asian Elderly Research Project.
- Speare, Alden, Jr., Roger Avery, and Leora Lawton(1991), "Disability, Residential Mobility, and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6: S133-S142.

- Tran, Thanh V. (1991), "Family Living Arrangement and Social Adjustment Among Three Ethnic Group of Elderly Indochinese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2: 91-102.
- Treas, Judith (1997), "Older Immigrants and U.S. Welfare Refor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 17, No. 9/10:8-33.
- Wolf, D.A. and B.J. Solo (1988), "Household Composition Choices of Older Unmarried Women", *Demography* 25: 387-403.
- Worobey, Jacqueline L. and Ronald J. Angel (1990) "Functional Capacity and Living Arrangements of Unmarried Elderly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5: S95-S101.

abstract

---

## **A Study on Living Arrangement of Older Korean Non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Geumyo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jor factors that affect patterns of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Korean noncitizens in the United States using the 1990 8% Public Use Microdata Sample (PUMS). In order to do so, I analyze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acculturation (English proficiency and Age at migration), economic circumstances (Personal Income an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receipt), health status (Mobility and Personal care limitation), and the ethnic community. The results show that acculturation and economic circumstan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patterns of living arrangements among older Korean aliens, whereas the health status and the ethnic community do not show consistent effects.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the impact of age at mig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litary living of older Korean noncitizens, though, the effect of English proficiency show the opposite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marital status. That is, among nonmarried elders, those who cannot speak English are more likely to live alone. The case is reverse for married elders.

The impact of economic feasibility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Those who receive SSI are much more likely to live apart from family, and elders whose annual personal income between \$5,001 and \$10,000 have the greatest propensity of solitary living-a large proportion of their income source is SSI. Individuals who receive SSI are also qualified to collect Medicaid, food stamps, rent subsidies, and other welfare

benefits. In a sense, the economic feasibility provided by welfare benefits is the key determinant of independent living of older Korean noncitizens. Therefore, the recent welfare reform which denies legal aliens welfare benefits such as SSI and food stamps will severely affect the presen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Korean aliens, and give economic burden to their family member.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in the elderly Korean Americans in terms of demographics, income, fertility, health status, and patterns of living arrangements by U.S. citizenship status. In particular, after controlling for age at migration as a proxy for acculturation,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tion in living arrangements between elderly Korean noncitizens and naturalized citizens. For both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reasons, future research on minority aging needs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U.S. citizenship status for its impact on patterns of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minority elderly.